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22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누6726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redacted]

피고, 피항소인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제 1 심 판 결 [redacted]지방법원 2014. 9. 25. 선고 2013구합10674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1. 18.

판 결 선 고 2015. 12. 3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5. 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3,158,720원, 지방교육세 1,219,870원, 농어촌특별세 1,315,870원 합계 15,694,46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22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면 제3행부터 제3면 제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6면 제14행부터 제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3면 제5행부터 제6면 제1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5)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의 위법 주장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개정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6) 납세고지의 위법 주장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는 본세 및 가산세를 구분하지 않고 그 총액과 취득세의 과세표준만을 기재하고 있고, 각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이러한 납세고지에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일부 누락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처분 전에 한 세무조사결과 통지에도 각 세목의 과세표준 및 세율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각 세액의 산출근거를 알 수 없으므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22

나. 관계 법령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18면부터 제20면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다. 판단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4면 제18행부터 제16면 제1행까지를 삭제하고, 제17면 제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7면 제1행부터 제17면 제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6) 납세고지의 위법 여부

가)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5호, 제55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와 세목,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자의 주소·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하여지는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에 대한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만큼, 납세고지서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세액 및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위 규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22

들은 강행규정으로서 위 규정들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두5773 판결 등 참조).

또한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므로,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및 가산세 상호 간의 종류별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제대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채 본세와 가산세의 합계액 등만을 기재하였다면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아야 하지만, 이와 같이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은 법령 등에 의하여 납세고지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납세고지서와 일체를 이룰 수 있는 것에 한정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두5505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고 한다)의 각 본세에 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세목별 세액의 합계액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취득세 등 각 본세와 그에 대한 가산세의 세액이 구분 기재되거나 가산세 상호 간의 종류별 세액이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않고, 또한 취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22

세의 과세표준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취득세 등 각 본세와 가산세의 세율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피고가 납세고지서 뒷면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참고자료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뒷면이라고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부동문자로 인쇄된 '취득세 신고 및 납부안내'란을 보더라도 각 세율 또는 과세표준 등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② [redacted]시장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이전인 2013. 4. 25. 세무조사결과 통보를 하였는데, 위 세무조사결과통보 문서에는 취득세 등 각 본세의 세액, 취득세의 과세표준, 각 본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각 세액과 계산식 등은 기재되어 있으나, 과세부과 근거에 관한 법률 규정,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 취득세 등 각 본세의 세율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세율은 지방교육세의 경우 10%임에도(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제153조 제1호) 일률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본세*20%"로 잘못 기재되어 있으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납부지연일수 등도 특정·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 중 일부를 누락한 하자가 있고, 위 세무조사결과통보에 의하여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22

재판장 판사 안철상

판사 김경환

판사 정승규